

2021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21. 8. 3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 없음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627	6,762	△135	△2.0%
일반회계	93	93	-	-
도시개발특별회계	6,534	6,669	△135	△2.0%
사업비	6,534	6,669	△135	△2.0%

II.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255	2,265	△10	△0.4%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75	200	△125	△62.5%

Ⅲ. 검토의견

- 세입예산은 없음.
- 공공개발기획단의 '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67억 62백만 원) 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만 1억 35백만 원 감액(2.0%)된 66억 27백만 원으로,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1천만 원 삭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억 2천 5백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 원)

사 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삭감	2,255	2,265	△10	△0.4%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잔액	75	200	△125	△62.5%

- 먼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21년도 기정예산(22억 6494만 원)보다 △0.4% 감액한 22억 55백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지난해 예산은 0원이었고 '21년도 본예산에서 처음 1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출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1천만 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비고
계	2,254,940	2,264,940	△1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50	7,550	0	
사무관리비	688,250	688,250	0	
국외업무여비*	0	10,000	△10,000	코로나19로 인한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0	13,500	0	
특정업무경비	19,200	19,200	0	
시설비	1,526,440	1,526,440	0	

- 지난해 2021년도 본예산 의결 이후 현재까지도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국외업무여비를 감추경하여 코로나 피해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외업무여비를 신규편성했던 사안으로,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해외출장 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여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ex. 회의 참가, 현지조사 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붙임-3. 사업개요)은 ‘21년도 기정예산(2억 원) 대비 62.5%를 감액한 7천 5백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이하 ‘지재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잔액 1억 2천 5백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지재법 상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1.6억~2억 원 수준에서 책정되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검토결과, 본 사업은 사전연구결과¹⁾를 활용할 수 있어 조사 난이도가 낮고, 경제성 분석의 실익이 낮다²⁾는 판단

1) 도로사업소 청사 현대화사업 기본구상, 도로관리혁신방안 등 사전연구자료

하에 수수료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준인 75백만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함. 그럼에도, 부정확한 수수료 산출로 인해 실제금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비용 산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산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수료 구성>

단계	난이도	내용	수수료 (만원)	비고
기본 수수료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5,000	난이도 고려
	난이도 1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도로 등)	7,000	
	난이도 2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복합 사업(복합시설, 복합도시개발, 복합단지)	8,000	
부가 수수료	①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등)가 필요한 경우	500~1,000	특이사항 에 따라 변동가능
	②	·도로 및 철도등의 교통량 조사	300~1,000	
	③	·총사업비 재추정 및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1,500~2,500	
	④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 시설의 수요 및 편익을 별도의 방법론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사업	시설별 1,500~2,500	
	⑤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기타 설문조사	500~3,000	
	⑥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500~2,000	
	⑦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 등	300~1,500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
연락처	02-2180-8216
이메일	cjh1786@seoul.go.kr

2) 서울도로관리센터는 동부도로사업소 기능을 확대한 것이므로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부가수수료에서 제외

【붙임-1】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29., 2020. 9. 11.>

【붙임-2】 참고자료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발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반투자사업, 지역전략산업,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함.
 - (대상) 지역전략산업, 노후산단 등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건립(지자체 시행), 환경시설 대보수, 청사신축 등
 - (기간) 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분석 범위에 따라 조정 가능

[붙임-3] 공공기관 이적지(인재개발원부지) 활용 사업개요

○ 대상지

- 위치/면적 : 서초구 서초동 393-1일대 / 108,825m²
- 사업기간 : `19. 10. ~ `25. 12.
- 총사업비 : 2,300억 원

○ 추진경과

- 2019. 4. :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 시행계획 방침 수립
- 2019. 8. : 산하기관 강북이전 대외발표(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강북 이전)
- 2019.10. :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0. 2. : 인재개발원 활용구상안 보고(안전총괄실장)
- 2020. 6. : 관계부서 및 기관 합동 보고회(활용구상 및 배치 구상안)
- 2020. 6. : 활용 기본계획 수립안 중간보고 결과(부시장 보고)
- 2020. 6. : 소방재난본부 협의(부지 내 우면119안전센터 이전 관련)
- 2020. 8. : 공공기관 이적지 사업추진 계획 방침 수립(제2부시장방침 제229호)
- 2020. 8. : 지재법 타당성조사 의뢰(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 면제
- 2020.12. : 용역 준공(활용 기본계획 수립)
- 2021. 1. : 지재법 타당성조사 의뢰(서울도로관리센터 및 품질시험소 건립) → 선정
- 2021. 4. : 지재법 타당성조사 착수(서울도로관리센터 및 품질시험소 건립) (~`21.9월)

○ 위치도



※ 2단계 서울도로관리센터 및 품질시험소 건립 부지 (현 우면119안전센터) 위치 (빨간색면적)